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. 8. 17 선고 2021가단875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3. 12. 19 선고 2023나216792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. 8. 17 선고 2021가단8753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흥모

피 고 1. B

2. C

3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

담당변호사 김민수

변론종결 2023. 7. 6.

판결선고 2023. 8. 17.

주문

1.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○ 주위적 청구취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파주시 E 전 2,926㎡ 중 각 1/3 지분에 관하여 2021. 8. 6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768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○ 예비적 청구취지

원고에게, 피고들은 파주시 E 전 2,926㎡ 중 각 피고들 지분 1/3 중 각 34/3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 주장 요지

파주시 E 전 2,926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는 F 소유였는데, 원고가 1974. 3. 10. F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.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G에게 이 사건 토지가 분배되었다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F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고 G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들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. 주위적으로 원고는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고,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4/39 지분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피고들의 각 지분 중 위 해당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다.

2. 판 단

가.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

먼저 원고가 1974. 3. 10. F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, 아래 다음

사정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74. 3. 10. F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1)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74. 3. 10.자 부동산매매계약서(갑 제5호증의 1), 1974. 3. 17.자 영수증(갑 제5호증의 2)을 매매계약 직접 증거로 제출하였다. 피고들은 위 각 서증이 위조되었다고 하면서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위 각 증거들의 인영 등 진정성립에 관한 감정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. 그리고 F의 상속인들이 ‘이 사건 토지는 F이 1974. 3.경 원고에게 매도하였다’는 내용으로 작성한 토지포기각서(갑 제9호증)를 간접증거로 제출하였다.

2) F의 상속인들(망 H, I, J, 망 K)은 종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89. 9. 27.경 패소하였는데, 위 상속인들 중 I, J 및 망 K이 종전 소송의 패소 확정 이후 원고가 다른 파주군 L 임야를 매도증서를 위조한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던 시기에 위 I 등이 원고에게 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다.

3) 2017. 12. 17.경 망 F의 상속인들 중 일부인 M, N이 원고와 나눈 대화 내용 녹취록을 보면 원고가 농지개혁법, 민사소송법 등과 관련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종전에 패소 확정된 소송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소송 수행 방안을 교묘하게 기획하고 허위 사실을 작출할 수 있게끔 위 상속인들에게 제안한 적이 있는바, F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그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4) 원고는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부동산의 매도증서를 위조한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던바, 이러한 사정들을 모아볼 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의 진정성에 강한 의심이 든다.

5) 원고는 2019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F의 상속인 망 K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주장하였다가 항소심 법원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(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367 판결)을 받았고, 2023. 5. 18.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위 원고 패소 판결은 확정되었다.

나.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

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4/39 지분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4/39 지분에 관하여 소외 I, J을 상대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1974. 3. 10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, 위 판결은 이 사건에 기판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위 승소판결이 있다고 하여 실체법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지분의 소유권을 확정짓는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 론

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박근정